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1조2(가입대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2(손해배상청구일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다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6조2(양도)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제19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보상 특칙)
제20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
제21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3조(청약의 철회)

제24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7조(조사)
제28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9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제30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제31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2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3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4조(계약의 해지)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6조(보험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7조(공제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시효)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설명서 교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개인정보보호)
제45조(준거법)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특별약관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부표>

가입자 유의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공제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공제가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일반적인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필서명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공제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5. 공제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등
- 공제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
- 공제목적을 양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등
-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이 변경된 경우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3) 조합은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9. 대위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주요 보험용어 해설

공제용어	용어 해설
공제약관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와 조합과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공제증권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공제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공제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공제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입금액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할 때 조합이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상한도액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기간
공제연도	공제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공제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공제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영업일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약관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1조2(가입대상)

① 이 공제의 가입대상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합니다.
② 조합은「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사와 보험업무 및 보상 등에 관한 공제계약 및 포괄적인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정관 및 공제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사업을 시행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공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조합과 공제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이 공제에서 피공제자는 아래를 말합니다.
      1) 기명피공제자(공제증권에 피공제자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2) 기명피공제자의 임원 또는 직원
      3) 기명피공제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라.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및 동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배액배상금을 포함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보상한도액: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라.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바. 대위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범죄행위 :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라.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마.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전자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바. 발견 : 발견이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하여, 다음 중 빠른 때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의 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피공제자에 제기되는 최초의 통보

2) 언론매체 또는 미디어에서의 최초의 공표

3) 인터넷 게시판에의 기재 등 제3자에 의한 최초의 공표

4) 피공제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인

사. 위문품·위로금 비용 :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사죄를 위해서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송부하는 위문품(피공제자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서비스권, 할인권, 티켓, 회수권 등이나 피공제자만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상품 등은 제외합니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 특허권 침해 : 특허권 침해라 함은 특허법 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공제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사고」라고 합니다)으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2(손해배상청구일자)

① 공제증권상에 소급보상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상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③ 제2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나 기명피공제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공제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2. 기명피공제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 포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생겨서, 그 결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초년도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10. 이 공제증권의 공제개시일 시점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동일한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 이 공제증권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 다른 피공제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단, 기명피공제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피공제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1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오염 물질의 배출, 유출, 누출 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나. 오염 물질의 검사, 감시, 청소, 제거, 누출 등의 방지, 처리, 무독화 또는 중화화의 지시 또는 요청. 오염 물질은 고체, 액체 혹은 기체 상태나 열을 띤 유해한 물질 또는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15. 피공제자에 지급한 보수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16. 제3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7. 항공기, 승강기, 자동차 또는 기타 실외의 선박·차량(인력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8.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법인 기타 모든 조직이나 단체의 명예훼손, 신용훼손, 루머 혹은 브랜드가치하락으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1. 계약의 조항, 보증 또는 합의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
22.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제공을 중단, 종료 또는 그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23. 피공제자의 도산(또는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4. 유가증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5.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규에 의거한 부정경쟁에 근거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6. 피공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피공제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27. 피공제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경영, 관리하는 사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나, 피공제자의 모회사, 자회사, 계승한 사업체 및 그 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28.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29. 위로금·위문품 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회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다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공제)계약자나 피보험자(공제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조합)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공제)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공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공제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보험(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6조2(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이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조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20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

며, 추가공제료를 납입하면 제21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① 공제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② 조합이 이 공제를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공제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상일자로 하는 공제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③ 조합이 이 공제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공제로 대체했을 경우

제19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보상 특칙)

조합이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상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②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공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공제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부터 공제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조합에 배상청구 없이 사고만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공제나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제2호에 따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상기간은 이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조합은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4관 |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조합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제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은 공제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4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조합이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인터넷 홈페이지(조합 온라인창구 포함)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조합 온라인창구 포함)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5. 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7조(조사)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 공제료의 납입

제29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4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0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1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

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9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4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조합은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4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관 |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공제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조합은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합은 제37조(공제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은 제37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조합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4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 또는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설명서 교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조합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제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공제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조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3조(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공제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공제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공제계약자 및 공제료납부자가 법인인 공제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특별약관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공제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으로 보험회사가 타당하고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단, 위기 발생 후 90일 이내에 생긴 비용에 한합니다) 단,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는 다음에 기재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원인 조사 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비용

   나. 위로금·위문품 비용

   다. 사과 광고 게재, 우편대금 등 위기에 의해 임시로 발생한 비용

   라.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개인정보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

   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바.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보수를 포함합니다)

   사.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비용

   아. 제3자로부터 불합리하게 강요받은 일체의 금액

   자. 피공제자의 인건비 및 그 외 일반 관리비

3. 위기관리컨설팅회사

   보험회사가 승인하는 위기의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로 인한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로 인한 위기
2.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
3. 초년도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생긴 위기
4. 이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

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위기

5. 기명피공제자 또는 기명피공제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위기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위기(단, 화재, 파열, 폭발 등의 물리적 사유에 의한 경우(직접, 간접을 묻지 않습니다)를 제외하고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생긴 경우, 그 결과로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위기
8. 피공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로 인한 위기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공제기간 중 지급하는 총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② 위기관리컨설팅비용 보상한도액 : KRW[ ]

제5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그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로 인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공제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의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경찰 혹은 관공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일
5. 그 외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공제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보험회사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6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대체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손해액」을「위기관리컨설팅비용의 금액」로 대체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아래에 기재된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의 행위로 인한 비용에 한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적 기관에 대하여서 문서에 의해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것
2.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그 외 유사한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하는 것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피공제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보험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공제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가. 변호사로부터 법률상의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단,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나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정기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 또는 제기되는 것으로 인한 보수를 제외합니다.)

   나. 위기의 원인 조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다. 전화 회선의 증설 비용, 통화료 또는 통신 업무를 콜센터 회사에 위탁하는 비용

   라.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마.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바.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사. 위로금·위문품 비용

   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제39조의4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의 통지를 위해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로 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

치적 소요로 인한 위기

2.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
3. 초년도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생긴 위기
4. 이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위기
5. 기명피공제자 또는 기명피공제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위기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위기(단, 화재, 파열, 폭발 등의 물리적 사유에 의한 경우(직접, 간접을 묻지 않습니다)를 제외한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이 생긴 경우, 그 결과로써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위기
8. 피공제자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로 인한 위기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아래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을 총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③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 : KRW[ ]
위기관리실행비용 자기부담금 : KRW[ ]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비율 : [ ]%

제5조(1회의 위기)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공제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의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경찰서 혹은 관공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일
5. 그 외 보험회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공제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보험회사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6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대체규정)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손해액」을「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삭제)

이 특약 조항에 대하여 조합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8호
2.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추가) 제1호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동법에 의거 처분 받은 과징금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과징금은 피공제자가 지급해야 할 행정상의 과징금을 의미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과징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피공제자가 사고해결 노력을 게을리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과징금이 가중된 경우 그 초과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비용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조합은 상기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조합은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호 또는 2호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제연합(UN)의 결의안 또는 유럽연합(EU)·영국·미국의 법규에 의한 어떠한 무역제재, 경제 제재, 금지, 제한 조치를 위반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공제약관 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